

그때부터 여신잔액에 대하여, 곧 지연배상금을 산출하여 지급하기로 합니다.

제3조 [차용총액 확정 및 분할상환기일표 통지]

- ① 분할실행하는 여신의 경우, 채무총액은 최종의 실행 후에 확정되며, 확정방법은 분할 상환기일표 및 영수증 기타 증빙자료에 의합니다.
- ② 분할상환 여신의 경우, 회사는 확정된 채무총액에 대한 분할상환기일표를 작성하여 채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.

제4조 [감액·정지]

- ① 한도거래 및 분할 실행하는 여신의 경우, 국가경제·금융사정의 급격한 변동 또는 본인의 신용상태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여신거래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될 때에는, 회사는 통지에 의하여 제1조의 여신(한도)금액을 줄이거나, 거래기간에 불구하고 여실행을 일시 정지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본인은 감액으로 말미암은 한도초과 금액은 곧 갚기로 합니다.
- ② 제1항에서 정한 사유가 해소되어 정상적 여신거래가 가능한 경우에는 회사는 곧 감액, 정지를 해소하기로 합니다.

제5조 [비용의 부담]

- ① 본인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회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부담하기로 합니다.
 1. 취급수수료
 2. 본인의 요구에 따라 발생하는 제증명·확인서 등의 소요비용
 3. 법령상 본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인정된 비용
- ② 인지세는 본인과 회사가 각 50%씩 부담하기로 합니다.
- ③ 근저당설정비용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부담하기로 합니다.
 1. 등록세, 지방교육세, 등기신청수수료 및 법무사수수료, 근저당물건의 조사 또는 감정평가수수료 발생 시 회사 부담
 2. 국민주택채권매입비 발생시 본인 부담
 3. 기타 비용으로 부담주체가 불분명한 비용 발생시 본인 및 회사가 각 50%씩 부담
- ④ 근저당말소비용은 본인이 부담하기로 합니다.
- ⑤ 채무불이행 또는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여신거래기본약관 제4조(비용의 부담)에 따르기로 합니다.

제6조 [담보의 제공]

- ① 회사는 약정서상 본인의 회사에 대한 모든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별도의 담보를 제공할 것을 본인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본인 및 담보를 제공하는 담보제공자는 회사가 제시하는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즉시 담보를 제공하기로 합니다.
- ② 이 약정에 의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, 합리적인 사유가 없는 한 동 담보는 대출개시일 전에 회사에 제공하며, 담보물에 대하여 회사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대출개시일로부터 대출완료일까지 회사가 동의하는 종류와 금액의 보험에 가입하고 그 보험금청구권에 회사를 위하여 질권을 설정하기로 합니다. 동 보험가입은 회사가 대행할 수 있으며 보험료 등 비용부담의 주체는 쌍방의 합의

에 따라 결정하기로 합니다.

제7조 [연대보증]

- ① 금융회사는 채무자와 여신거래를 할 경우 연대보증인(명칭 또는 방식 여하를 불문하고 실질적으로 이와 유사한 채무를 부담하는 사람을 포함합니다)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.
-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연대보증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.
 1. 법인에 대한 여신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자 중 1인에 한함. 단, 라목의 경우 2인이상 가능하다. 최대주주
 - 나. 지분 30%이상 대주주, 과점주주 이사
 - 다. 본인과 배우자, 4촌이내 혈족·인척이 보유한 지분을 합산하여 30%이상인 주주
 - 라. 대표이사 또는 대표자(단, 고용임원 제외)
 - 마. 무한책임사원
- ③ 제2항 제1호 라목에 해당하는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연대보증 한도액은 해당 연대보증인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.
- ④ 연대보증인은 이 약정의 각 조항을 승인하고, 본인이 이 약정 및 이 약정에 부속하는 약정에 의하여 회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의 이행을 본인과 연대하여 보증하며, 그 이행에 관하여 이 약정 및 이 약정에 부속하는 약정과 여신거래기본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기로 합니다.

제8조 [대출금의 기한도래 전 상환]

- ① 본인은 대출기간 중도에 잔여 대출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중도상환일 현재까지 아직 상환하지 않은 금액(당월 대출금, 연체금 등)을 모두 상환하여야 합니다.
- ② 제1항의 경우 본인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이 정하는 한도 내에서 제1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에 중도상환수수료를 별도로 납부하기로 합니다. 다만, 여신거래기본약관 제8조에서 정한 기한의 이익상실 사유에 해당되어 금융회사가 기한 전에 대출금을 회수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하기로 합니다.
- ③ 제2항의 중도상환수수료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, 실제 대출 사용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증가하여서는 아니됩니다.

제9조 [자료의 제출 등]

본인은 회사가 여신거래기본약관 제20조 및 제22조에 근거하여 여신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타 자료를 회사의 요청이 있는 대로 즉시 제출하기로 합니다.

제10조 [권리의 양도]

- ① 회사는 이 약정상의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이 경우 채권양도 및 담보제공사실을 사전서면으로 통지하기로 합니다.
- ② 본인은 회사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이 약정상의 권리,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.

제11조 [금리인하 요구권]

- ① 본 대출거래 약정 당시와 비교하여 신용상태의 개선 등 금리인하 요청요건에 해당하는 본인은 회사가 규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서식 및 확인서류를 제출 하는 등 회사에서 정하는 방식으로 서면에 의하여

금리 인하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.

② 제1항의 경우 금융회사는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여 이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할 시 그 결과를 채무자에게 통지하기로 합니다.

제12조 [이 약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]

이 약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해석에 관하여는 회사의 여신거래기본약관을 따르기로 합니다.

제13조 [별도협의]

이 약정과 회사의 여신거래기본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.

여신거래기본약관 및 이 약정서 사 본을 확실히 수령하고, 주요내용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 였습니다.	본인	(인)
	연대보증인	(인)
	연대보증인	(인)

- 특 약 사 항 -